

충청북도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심사보고서

1996. 10. 11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제출일자 : 1996년 9월 25일

회부일자 : 1996년 9월 25일

다. 상정일자 : 제1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96. 10. 11)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므로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충청북도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재정운영 계획 및 결산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재평)

충청북도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첫째,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의회의 결산승인 후)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 토록 하며,

둘째,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침
2. 당해년도의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기금운영계획·공유재산·중요 물품등의 취득·처분계획 공기업 운영계획,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 하고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1. 전년도의 결산 개황·세입세출 집행 상황·주민부담 지방세 상황·지방채등 채무 관리 상황·기금운용 상황·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 함.

셋째, 공개방법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는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도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본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 공개제도를 도입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 본 조례의 목적은 주민공개를 통한 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정당성 확보에 있는 것인데 안 제5조 2호를 보면 제한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포괄적이다. 운영하는 측의 자의적 해석범위를 지나치게 많이 부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본 조례제정의 목적이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여겨지며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켜야 할 당위성은 무엇인가.

답변 : 안 제5조 제2항의 경우는 주민이 도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할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중 한 부분으로 본 조례의 운영상 꼭 필요한 내용임.

5. 토론요지 :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 '96. 10. 11
-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나. 수정이유

-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의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포괄적으로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둔다는 것은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음.

다. 주요골자

- 안 제5조 제2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삭제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참석 7명, 찬성 7명)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 충청북도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대한수정안